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146
----------	------

2022년 4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2년 3월 10일
- 다. 회부일 : 2022년 3월 16일
- 라. 상정일 : 제30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3월 3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대현 평생교육국장)

### 가. 제안이유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2015. 6. 3.부터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으로, 2019. 7. 1.부터 3년의 재위탁 기간이 2022. 6. 30.자로 만료될 예정임.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2년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2차(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음.

- 현 위탁법인(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이 가정 밖(위기) 청소년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살려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2024. 6. 30.까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재계약 사유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가정 밖(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됨.
    - 현 위탁법인(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은 1967년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후 1969년 4년제 대학 설립인가 받아, 2021년 현재 신학과 외에 교육학과 등 학부 9개 학과, 사회복지대학원 등 10개 대학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청소년교육 및 상담·복지에 기여하고 있음.
    - 강북청소년드림센터 외에 위기에 처한 학생대상으로 교육복지센터 운영,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가족플라자, 교육·문화·돌봄 서비스 및 전문상담을 통한 가족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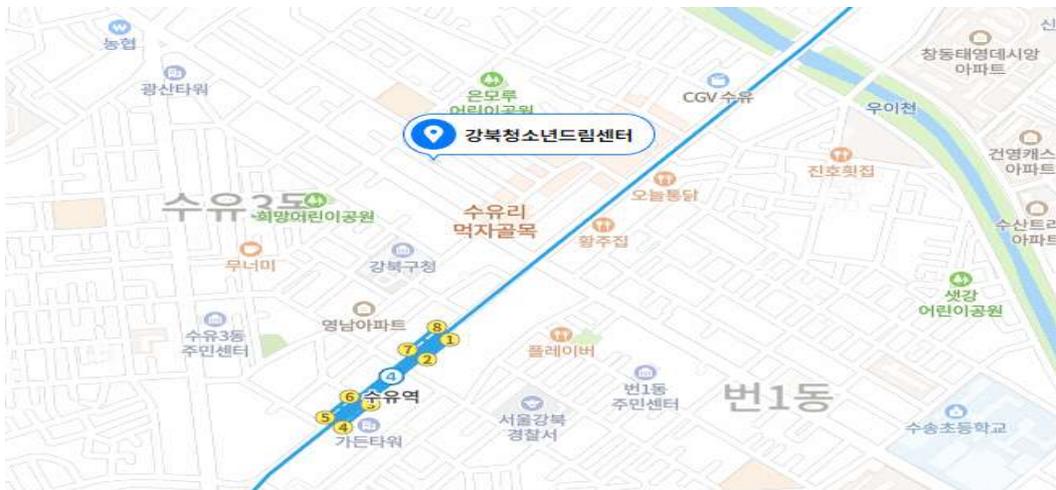
지원센터, 미취학 아동의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종합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바, 향후 2년간 동 법인에게 재계약을 통해 운영토록 하고자 함.

○ 위탁 사무 내용

- 위기·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일시보호사업
- 위기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 기관·단체 연계 활동 지원
- 가출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40길 5-26
- 시설규모 : (대지) 212.2 $m^2$ , (연면적) 333.37 $m^2$
- 주요시설 : 상담실, 교육실, 숙소, 사무실 등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 2년(2022. 7. 1 ~ 2024. 6. 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24백만원('22년)
  - 산출근거
    - 인건비 400백만원, 운영비 118백만원, 사업비 106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가. 민간위탁 동의안 총괄 내역

-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해 제출된 동의안은 총 6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 제306회 임시회에 제출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의안 번호	시 설 명	구분	위탁시설 개요
3142	강동 청소년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재 지 :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li> <li>- 개관일자 : 2012. 10. 01.</li> <li>- 시설규모 : 부지면적 1,983㎡/ 건물 5,125.88㎡</li> <li>- 민간위탁기간 : 3년(2022.07.01 ~ 2025.06.30)</li> <li>-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li> <li>- 소요예산 : 2,176백만원(2022년)</li> </ul>
3143	청소년 드림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재 지 :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삼성동 171-1)</li> <li>- 개관일자 : 2012년 10월 1일</li> <li>- 시설규모 : 부지 22,650㎡, 건물 6,462㎡(1·4·5층)</li> <li>- 민간위탁기간 : 3년(2022.07.01 ~ 2025.06.30.)</li> <li>-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li> <li>- 소요예산 : 2,572백만원(2022년)</li> </ul>
3144	은평청소년 증장기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재 지 : 은평구 통일로 92길 37-6(불광동) 동산홈타운</li> <li>- 개관일자 : 2017.12.12.</li> <li>- 시설규모 : (대지) 143.99㎡, (연면적) 214.64㎡</li> <li>- 이용대상 : 중장기적 보호가 필요한 여자청소년</li> <li>- 민간위탁기간 : 3년(2022.07.01 ~ 2025.06.30.)</li> <li>-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li> <li>- 소요예산 : 347백만원(2022년)</li> </ul>

의안 번호	시 설 명	구분	위탁시설 개요
3145	망우청소년 단기쉼터	재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재 지 : 중랑구 송림길 156</li> <li>- 시설규모 : (대지) 241.56㎡, (연면적) 483.12㎡, (전용면적) 241.56㎡</li> <li>- 개소일자 : 2015.01.01.</li> <li>- 이용대상 : 9~24세 가정 밖 청소년(여성)</li> <li>- 위탁예정기간 : 2년(2022.07.01 ~ 2024.06.30.)</li> <li>- 수탁기관 선정방법 : 협약방식에 의한 재계약</li> <li>- 소요예산 : 624백만원(2022년)</li> </ul>
3146	강북청소년 드림센터	재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재 지 : 강북구 한천로140길 5-26</li> <li>- 시설규모 : (대지) 212.2㎡, (연면적) 333.37㎡, (전용면적) 106.86㎡</li> <li>- 이용대상 : 위기·가정밖청소년(남자)</li> <li>- 위탁예정기간 : 2년(2022.07.01 ~ 2024.06.30.)</li> <li>- 수탁기관 선정방법 : 협약방식에 의한 재계약</li> <li>- 소요예산 : 624백만원(2022년)</li> </ul>
3147	중랑청소년 성문화센터	재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재 지 : 중랑구 용마산로 지하227, 723-106호(107호,303호 포함)</li> <li>- 시설규모 : 지하1층 71㎡, 지하3층 58㎡, (총 전용면적 129㎡)</li> <li>- 개관일자 : 2015.04.01.</li> <li>- 위탁예정기간 : 2년(2022.07.01 ~ 2024.06.30.)</li> <li>- 수탁기관 선정방법 : 협약방식에 의한 재계약</li> <li>- 소요예산 : 238백만원(2022년)</li> </ul>

○ 민간위탁 조례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기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의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2021.12.30. 조례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소년시설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청소년 활동시설 1개소(강동청소년센터), 청소년 복지시설 3개소(망우단기쉼터, 은평중앙기쉼터, 강북청소년드림센터), 기타 청소년시설 2개소(중랑성문화센터, 청소년드림센터) 등 총 6개소임.

※ 재위탁·재계약의 정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

- 재위탁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 새로운 단체 등에 위탁하는 재위탁은 3건, 기존의 운영 단체에게 위탁하는 재계약은 3건이며, 2년간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의 경우, 성과보고서를 통해 재계약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1) 성과지표의 적정성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제3항은 민간위탁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효과성 평가, 위탁사무 운영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청소년 활동시설과 보호시설은 설치 목적이 상이하여, 시설의 특성별 다른 전문성과 운영방식이 요구되며, 이를 감안하여 각각 다른 전문성을 가진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민간위탁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동일한 지표로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어, 위탁사무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대했던 수준의 효과를 도출해냈는지 여부, 추진과정에서 효율적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못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는바,
  - 금번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가 위탁목적에 부응하는 성과를 달성하거나, 기대한 민간위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평생교육국이 추진한 민간위탁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내실있는 성과보고서 제출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 활동·보호 등 시설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시설별 지표를 달리하거나,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를 동시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등 청소년 시설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를 위하여 지속적 평가지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시설의 평가지표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배점	
총점			100	
1. 운영기반 (25점)	1.1. 운영전략 관리 (10점)	1.1.1. 중장기발전계획의 적정성	4.00	
		1.1.2. 연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4.00	
		1.1.3. 자체평가 및 환류의 적정성	2.00	
	1.2. 조직 및 인력 관리 (12점)	1.2.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4.00	
		1.2.2. 임용 및 복무관리 적정성	4.00	
		1.2.3. 직원교육 지원의 적극성	2.00	
		1.2.4.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운영 적정성	2.00	
	1.3. 재정 및 자원 관리 (13점)	1.3.1. 회계 관리 적정성	7.00	
		1.3.2. 사업예산 집행 적정성	2.00	
		1.3.3. 재산 및 물품관리 적정성	2.00	
		1.3.4. 시설 및 안전 관리 적정성	2.00	
	2. 사업운영 (30점)	2.1. 프로그램 개발 (5점)	2.1.1.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의 전문성	5.00
		2.2. 사업운영 관리 (15점)	2.2.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5.00
2.2.2. 특화전문 활동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			5.00	
2.2.3. 프로그램 질 관리의 체계성			5.00	
2.3. 대외협력 (10점)		2.3.1. 지역 연계협력의 체계성	5.00	
		2.3.2. 홍보 활성화 수준	5.00	
3. 사업성과 (35점)	3.1. 사업운영 실적 (15점)	3.1.1. 청소년 시설이용률	7.50	
		3.1.2. 청소년 특화전문활동 사업비 수준	7.50	
	3.2. 지역사회 기여도 (10점)	3.2.1. 성과의 지역사회 확산 노력	5.00	
		3.2.2. 우수한 성과의 창출	5.00	
	3.3. 만족도 관리 (10점)	3.3.1.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4.00	
		3.3.2. 고객만족도 수준	6.00	
가·감점(5점)	A. 가점 : 시정기여도		5.00	
	B. 감점 :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 개선		-5.00	

## 2) 위탁사무의 목표 제시

- 평생교육국은 서울시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수탁단체에게 과도하게 포괄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거나, 극히 단순화한 ‘위탁사무’라는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포괄적이거나 단순화된 청소년정책이 수탁단체에 구체적 설명없이 전달될 경우 수탁단체의 사무목적이 왜곡될 수 있으며, 시설기능을 저해할 수도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서울시 청소년정책을 각 시설 특성에 맞는 시설의 운영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청소년정책을 구체화하고, 시설별 사업목표를 제시하여, 시설별 합리적인 성과평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은 모호한 목표 설정을 지양하고, 시설별 명확한 목표설정과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민간위탁 기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나.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 의안번호 3414번, 3415번 3416번은 청소년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일반적으로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청소년범죄 및 범죄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생활지원(의·식·주), 상담·교육을 통한 정서적 지지, 문화활동, 의료 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쉼터 중 일시쉼터는 고정형과 이동형(차량)으로 나눌 수 있고,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일시보호를 통해 가정복귀가 주요 업무이며, 단기 및 중·장기(자립지원관 포함) 쉼터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게 생활·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 청소년쉼터의 종류 〉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3년 이내 중장기보호
이용대상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출 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 청소년
핵심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원 (아웃리치)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상담지원, 학업지원, 사회복지를 위한 자립지원
기능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가출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 청소년쉼터와 연계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제공 등 ·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 활동 ·의식주 등 보호 서비스 제공 ·일시·중장기 쉼터와 연계 ·가정 및 사회복지 대상 청소년 분류, 연계서비스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및 주요도심)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복지	자립지원
비고	숙소, 화장실의 경우 필히 남·여용 분리 운영	반드시 남·여용 쉼터를 분리 운영하여야 함	

출처 : 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 2권, 172p 발췌

※ 금번 회부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단기(강북청소년드림센터, 망우청소년단기쉼터) 및 중·장기쉼터(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로 생활지원, 학업지속으로 가정복귀 및 사회 진출 지원을 주요 사무로 하고 있음.

〈 시립청소년쉼터 현황 〉

시설명	면적(㎡)	소재지	입소정원		개관일	위탁기간	운영단체
			남	여			
합 계			81	101			
용산일시	130	용산구	5	5	07.12.21.	20.01.01.~22.12.31.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드림일시	859	강남구	10	10	12.12.18.	20.07.01.~22.06.30.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강북드림	333	강북구	10	-	15.06.03.	19.07.01.~22.06.30.	(학)충신대학교
서북이동	버스 45인승	청소년 밀집지역(서북)	7	8	04.03.31.	20.01.01.~22.12.31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서남이동	버스 25인승	청소년 밀집지역(서남)	7	8	14.12.26.	20.01.01.~22.12.31.	
동북이동	버스 25인승	청소년 밀집지역(동북)	5	5	14.12.26.	20.01.01.~22.12.31.	(사)인터넷꿈희망터
동남이동	버스 45인승	청소년 밀집지역(동남)	7	7	13.12.27.	20.01.01.~22.12.31.	
신림단기	455	관악구	20	-	98.05.18.	20.01.01.~22.12.31.	대한성공회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
신림 중장기	153	관악구	10	-	04.08.01.	20.01.01.~22.12.31.	
금천단기	703	강남구	-	20	98.05.20.	20.01.01.~22.12.31.	(사)한국청소년연맹
금천중장기	115	금천구	-	8	14.03.01.	20.01.01.~22.12.31.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망우단기	483	중랑구	-	20	15.01.01.	19.07.01.~22.06.30.	(사)삼동청소년회
은평 중장기	214	은평구	-	10	17.12.12.	20.06.30.~22.06.30.	(사)행복창조

- 본 동의안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이하 '총신대학교')에서 운영하던 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위탁기간 만료(2022.6.30.) 시점이 도래하여, 본 시설의 관리·운영을 재계약에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운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40길 5-26
- 시설규모 : (대지) 212.2㎡, (연면적) 333.37㎡
- 주요시설 : 상담실, 교육실, 숙소, 사무실 등
- 위탁사무 내용
  - 위기·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일시보호사업
  - 위기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 기관·단체 연계 활동 지원
  - 가출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민간위탁기간 : 2년(2022. 7. 1 ~ 2024. 6. 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 소요예산 : 624백만원(2022년)
  - 인건비 400백만원, 운영비 118백만원, 사업비 106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2014년 4월 24일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본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2014.4.24.)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추진현황 〉

- 2014.08.14.~2017.06.30. : 최초 수탁 공모[(학)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 2017.07.01.~2019.06.30. : 1차 재계약 [(학)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 2019.07.01.~2022.06.30. : 2차 재위탁 공모[(학)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 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의 상담, 활동, 휴식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쉼터:정원 10명, 남자청소년) 및 활동 시설을 통합 설치하여 접근성과 이용도를 향상시키고자 설치된 청소년복합시설로, 10명의 인력이 6억 2천 4백만원(2022년 민간위탁금)의 예산으로 2개 분야 6개 사업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인력 현황 〉

(단위:명)

구분	센터장	팀장	청소년보호팀	문화사업팀	계
정원	1	1	5	3	10
현원	1	1	5	3	10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층별 공간 배치 현황 〉

구분	사용 현황
1층(105.66㎡)	움카페, 프로그램실 : 주민개방, 교육프로그램 지원
2층(106.59㎡)	청소년쉼터(남), 샤워실, 식당/주방 : 보호, 휴식, 취식 등
3층( 76.18㎡)	사무실, 상담실 : 시설 관리, 상담 등
4층( 44.94㎡)	다목적실: 노래방, 집단상담, 각종 회의 등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사업 추진 현황 〉

사업명	세부 프로그램
보호사업	생활지원, 긴급지원, 가출팸·청소년 독립가구 지원 등 6개 사업
상담지도사업	상담, 예술치료, 상담사례 슈퍼비전, 사례회의
교육문화사업	문화체육캠프, 진로체험, 토크데이, 청소년동아리모임 등 11개 사업
대외협력사업	지역주민나눔, 유관기관 협약 및 연계, 실행위원회 등 7개 사업
홍보사업	홍보
특별지원사업	입소위기청소년자립지원, 한터협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

- 평생교육국은 위기청소년 등(가정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및 활동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많지 않으며,
  - 충신대학교는 개관 초기부터 본 시설을 운영하여 센터 운영 및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확보하고 있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위기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제공 경험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정적 시설운영이 필요하는 점을 기존 수탁단체와의 재계약 이유로 제출하고 있음.
  
- 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인력은 청소년 보호와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설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본 시설의 정원을 8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시설과 유사한 ‘시립청소년드림센터(삼성동)’와 비교하면 정원 규모는 1/3의 수준으로, 위탁사무의 원활할 역할 수행을 위한 적정인력이 배치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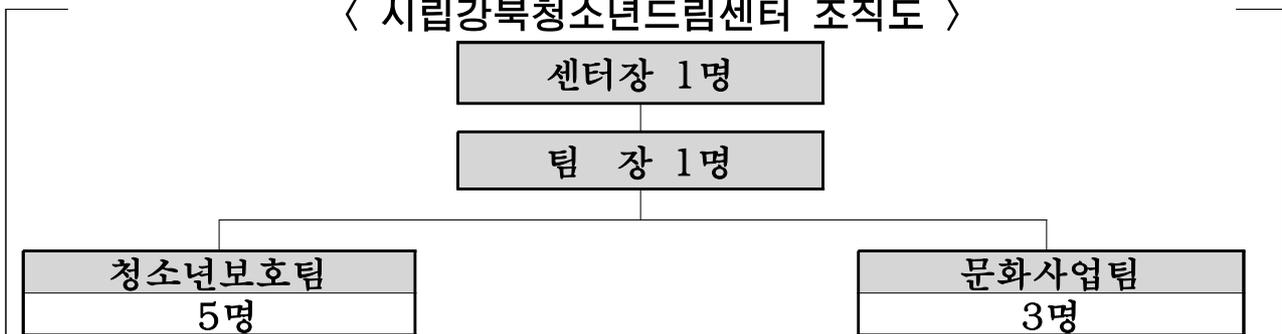
〈 드림센터의 정원 기준 비교 〉

	계	일 반 직								기능직·고용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기능	고용
시립청소년드림센터	25	23	1	1	1	3	4	13	-	2	1	1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8	8	-	1	-	1	2	2	2	-	-	-

출처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2] 청소년시설별·직급별 정원 범위(제7조 관련)

- 시립청소년드림센터(삼성동)가 성문화센터, 쉼터, 대안교육기관 2개소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강북청소년드림센터보다 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나,
  - 강북청소년드림센터 기능 중 쉼터는 청소년의 야간보호 등을 위해 야간 필수 인력을 운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담, 교육, 문화, 목적사업 등 주간에도 추진해야 사무를 위한 인력도 유지해야 하며, 쉼터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공휴일에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이 요구되고 있음.
  - 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부족한 정원으로 인해 청소년보호팀의 인력 뿐만 아니라 문화사업팀의 인력까지도 야간근무에 투입되고 있으며, 야간근무 후 대체휴무로 인한 주간 업무공백과 이로 인한 시설의 기능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짐.
  - 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경우, 청소년보호 시설의 기능유지 및 청소년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 배치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조직도 〉



- 인력부족으로 인한 시설기능 저하 우려는 시립쉼터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쉼터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 365일 24시간 기능 유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시설운영 등을 감안할 때,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별표2에 규정된 시립쉼터의 정원(현재 8명)이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 평생교육국은 필요인력을 정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여성가족부는 휴무 없는 24시간 운영된다는 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 또는 그 이상의 교대 근무를 권장하고 있으며, 필수인력의 공백 방지 및 교대근무를 시행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인력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쉼터의 종사자 복무관리 〉

#### 3. 시설장 및 종사자 복무관리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지자체 및 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백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조정·시행
  -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보호 등을 위한 24시간 상담 및 구조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근무형태 권장(2교대, 3교대, 4교대 등)

#### ※ 〈예시〉 3교대의 경우

- ① 오전조(06:00~15: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② 오후조(14:30~23: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③ 야간조(22:30~06:30, 휴게시간 1시간 포함)로 구분

출처 : 2021 청소년사업 안내 2권, 189p 일부 발췌(재구성)

### 〈 쉼터의 근로기준법 적용 〉

#### 4. 근로기준법 등 기타

- (원칙)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청소년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할 것
  -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보호 등을 위한 24시간 상시 운영에 필요한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시행
  - 최저임금 준수 및 1주 최대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것

출처 : 2021 청소년사업 안내 2권, 190p 일부 발췌

○ 쉽터 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직률의 원인은 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근무환경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80% 이상 고용 유지 및 승계를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시설 내 전문인력의 확보·유지 및 유출방지라는 측면에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청소년시설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됨.

※ 초과근무 :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 연장근무 :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는 경우, 1주 12시간만 가능
- 야간근무 :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 야간근무는 연장근무, 휴일근무와 달리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시간이라도 하더라도 상기 시간에 근무하면 야간근무에 해당
- 휴일근무 :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에 일했다면 휴일근로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 〉

○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중략)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의무가 발생함을 명시

☞ '특별한 사정'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4.)'에서 명시한 사유\* 포함

출처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2021.10.)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46
----------	------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2015. 6. 3.부터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으로, 2019. 7. 1.부터 3년의 재위탁 기간이 2022. 6. 30.자로 만료될 예정임
-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2년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2차(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음
- 다. 현 위탁법인(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이 가정 밖(위기) 청소년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살려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2024. 6. 30.까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재계약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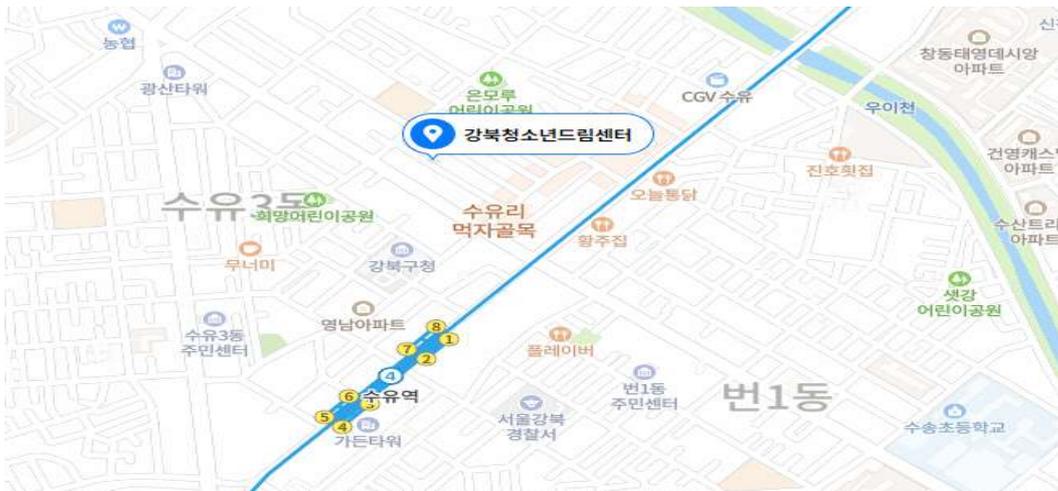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가정 밖(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됨
- 현 위탁법인(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은 1967년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후 1969년 4년제 대학 설립인가 받아, 2021년 현재 신학과 외에 교육학과 등 학부 9개 학과, 사회복지대학원 등 10개 대학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청소년교육 및 상담·복지에 기여하고 있음
- 강북청소년드림센터 외에 위기에 처한 학생대상으로 교육복지센터 운영,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가족플라자, 교육·문화·돌봄서비스 및 전문상담을 통한 가족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미취학 아동의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종합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바, 향후 2년간 동 법인에게 재계약을 통해 운영토록 하고자 함

#### 다. 위탁 사무 내용

- 위기·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일시보호사업
- 위기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 기관·단체 연계 활동 지원
- 가출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40길 5-26
- 시설규모 : (대지) 212.2 $m^2$ , (연면적) 333.37 $m^2$
- 주요시설 : 상담실, 교육실, 숙소, 사무실 등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2년(2022. 7. 1 ~ 2024. 6. 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24백만원('22년)
- 산출근거
  - 인건비 400백만원, 운영비 118백만원, 사업비 106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황미연 (☎ 2133-4128)